

군산시 공고 제2022 - 992호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5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2019. 5. 9., 일부개정)에 따라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금고지정의 투명성과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금고의 약정기간을 “3년” 에서 “4년 이내” 로 수정(안 제3조 제3항 개정)
- 나. 공고 관련 “인터넷에 게재하여야 하며” 라는 불필요한 용어 삭제 (안 제6조 제1항, 안 제7조 제1항 개정)
- 다.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 를 “출연하도록 하고” 로 수정 (안 제10조 제1항 개정)
- 라.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관련 내용 중 “행정안전부” 를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연평균잔액 대비” 를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으로 수정 (안 제10조 제4항, 안 제1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협의 : 기획예산과(규제심사, 법무의정), 여성가족과(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 라. 입법예고기간 : 2022. 5. 2. ~ 5. 2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5월 2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시민납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시민납세과  
(전화 : 063-454-2512, FAX : 063-453-9183)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시민납세과 세외수입계 (전화 063-454-2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2.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신·구조문 대비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3년으로” 를 “4년 이내로” 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 중 “인터넷에 게재하여야 하며” 를 삭제한다.

제10조 제1항 중 “출연하고” 를 “출연하도록 하고” 로 한다.

제10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 를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1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중 “연평균잔액 대비” 를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고시 제 2022-57호

### 군산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신설)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 동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22년 4월 29일

군 산 시 장



####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

##### 가.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4	유수지	군산시 산북동 1024-5번지 일원	-	증) 7,633	7,633	-	

##### 나.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14	유수지	· 유수지 신설, A=7,633㎡	· 기 선정된 산북 배수분구지역의 상습 침수지역에 대하여 단계별 하수도 정비 대책을 수립하여 항구적인 침수예방을 통한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함

#### 2. 관계도서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을 통해 열람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시 고시 제 2022-58호

### 202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22년 4월 29일

군 산 시 장



- 1.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2년 1월 1일
  - 나. 개별주택수 : 20,884호
  - 다.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지번, 가격 등(개별 내용 생략)
  - 라.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세무과, 읍면동사무소
- 2. 이의신청 방법
  - 가. 신청기간 : 2022. 4. 29. ~ 5. 30.
  - 나. 제출자 및 장소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시청(세무과),읍·면·동
  - 다. 제출방법 : 기한 내 이의신청서 작성 후 제출
  - 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
- 3. 행정구제신청 안내 :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4. 시행일
  - 이 공시는 공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고시 제2022 - 61호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주택법」 제15조제6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8일

군 산 시 장



- 1. 사 업 명 : 군산 구암동 317-4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 2. 사업주체
  - 가. 명 칭 : (유)에스지산업개발
  - 나. 대 표 자 : 유승욱
  - 다. 주 소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오공로 11-13
- 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2년 4월 22일
- 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내용
  -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동 317-4 외 38필지
  -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
  - 다. 대지면적 : 35,431m<sup>2</sup>
  - 라. 건축면적 : 6,205.992m<sup>2</sup>(건폐율 : 17.52%)
  - 마. 연 면 적 : 129,246.4882m<sup>2</sup> (용적율 : 247.67%)
  - 바. 건축규모 :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6개동 외, 698세대

사. 주택공급 계획

형별	주택구분	세대수	전용면적(m <sup>2</sup> )	공용면적(m <sup>2</sup> )	공급면적(m <sup>2</sup> )	비고
계		698				
84A	민영주택	228	84.9836	29.5174	114.5010	
84B	민영주택	165	84.9889	29.3704	114.3593	
84C	민영주택	96	84.9643	28.7969	113.7612	
109A	민영주택	209	109.8699	35.4403	145.3102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자. 사 업 비 : 260,580,001천원

차. 사업기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4년 12월 31일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m <sup>2</sup>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60	구암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군산시 구암동 317-4번지 일원	-	증)36,237	36,237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적(m <sup>2</sup> )	결정사유
신설	60	군산시 구암동 317-4번지 일원	36,237	· 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공동주택 건설시 양호한 환경의 확보와 합리적인 토지이용 도모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2	4	30~33	보조간선 도로	7,790	경암동 3호광장	여방리 10호광장	일반 도로	6호광장	건고228 (’86.5.23)	
변경	대로	2	4	30~33	보조간선 도로	7,790 (150)	경암동 3호광장	여방리 10호광장	일반 도로	6호광장	건고228 (’86.5.23)	폭원 확장
기정	중로	1	23	20~24	보조간선 도로	706	구암동 대2-4	구암동 중1-4	일반 도로		군산고210 (’96.6.1)	
변경	중로	1	23	20~24	보조간선 도로	706 (135)	구암동 대2-4	구암동 중1-4	일반 도로		군산고210 (’96.6.1)	폭원 확장
기정	소로	3	871	6~7	국지도로	132	조촌동 대2-4	구암동 중1-23	일반 도로		군산고242 (’03.4.17)	
변경	소로	3	871	6~7	국지도로	132	조촌동 대2-4	구암동 중1-23	일반 도로		군산고242 (’03.4.17)	가각 변경

※ ( )는 폭원변경부분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대로 2-4	대로 2-4	· 일부구간(L=150m) 폭원확장(B=증 3m)	· 공동주택용지의 진출입 및 주변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중로 1-23	중로 1-23	· 일부구간(L=135m) 폭원확장(B=증 3m)	· 공동주택용지의 진출입 및 주변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소로 3-871	소로 3-871	· 가각변경	· 대로2-4호선 일부구간 폭원확장에 따른 가각변경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m <sup>2</sup> )	
-	1BL	36,237	1-①	구암동 317-4번지 일원	35,431	공동주택용지
			1-②	구암동 629-2번지 일원	441	도로용지(대로2-4)
			1-③	구암동 317-3번지 일원	365	도로용지(중로1-23)

##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	1-①	용 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건 폐 율	· 60% 이하	조례 60% 이하
		용 적 률	· 250% 이하	조례 250% 이하
		높 이	· 29층 이하	

## 4)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차량출입 허용구간	· 공동주택용지 진출입구 주변에 한하여 차량출입허용구간 지정 · 지정된 구간 이외 지역에서는 차량출입 불허
주변도로 폭원확장	· 공동주택용지의 진출입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로 신설 및 확폭 - 대로2-4호선 진출입구 구간(L=150m) 확폭개설 : B=중 3m - 중로1-23호선 부출입구 구간(L=135m) 확폭개설 : B=중 3m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실음생략

6. 관계도서는 군산시청(주택행정과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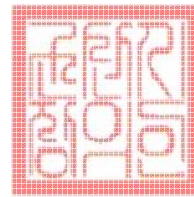
군산시 고시 제2022 - 63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협의,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9일

군 산 시 장



■ 고시사항

-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2022-00001호 (2022. 4. 28..)
- ② 허가를 받은자의 성명 및 주소 : 제9585부대
- ③ 허가목적 : 해안감시강화 목적
- ④ 허가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10-1번지 인근 공유수면
- ⑤ 면 적 : 13m<sup>2</sup>
- ⑥ 허가기간 : 2022. 4. 28. ~ 2036. 4. 28.까지

■ 고시사항

-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2022-00001호 (2022. 4. 28..)
- ② 허가를 받은자의 성명 및 주소 : 제9585부대
- ③ 허가목적 : 해안감시강화 목적
- ④ 허가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산59-1번지 인근 공유수면
- ⑤ 면 적 : 119m<sup>2</sup>
- ⑥ 허가기간 : 2022. 4. 28. ~ 2036. 4. 28.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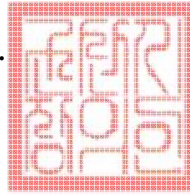
군산시 수도사업소 하수과 고시 제2022 - 1호

##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고시(성산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하수도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산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4. 20.

군 산 시



□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군산시장(하수과장)		
	주 소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사업시행의 목적 및 기본방향	본 사업은 미처리구역인 군산시 성산면 일원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하수관거정비를 통하여 강화되는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방류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사업시행지의 위 치 및 면적	위 치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둔덕·고봉·도암·여방리 일원		
	면적 (㎡)	하수처리구역면적 1.57km <sup>2</sup>	영구점용	6,935㎡
			일시점용	50,837㎡
계	57,772㎡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공공하수도 (하수관거)		
	명 칭	성산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	- 구암배수구역/성산배수분구 - 성산처리구역			
사업시행기간	2022. 02. ~ 2025. 02.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첨부 참조			

군산시 공고 제2022-889호

### 군산 도시계획시설(방안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전 열람공고

군산시 성산면 대명리 429번지 도시계획시설(방안시설 증축) 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변경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4. 20.

군 산 시 장



- 1.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2. 열람 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성산면 대명리 429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방안시설)사업
- 2) 명 칭 : 군산 성산 방안시설 조성공사(방안시설 증축)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사업면적 (㎡)		시설개요				비고
사업면적	39,030.6	기존시설	방안묘	1,375기	15,632구	16,976구
			방안탑	12기	1,344구	
		증축시설	방안당	1동	5000구	5000구
합 계	39,030.6	전체시설	방안묘	1,375기	15,632구	21,976구
			방안탑	12기	1,344구	
			방안당	1동	5000구	

라. 건축개요

대지위치	군산시 성산면 대명리 429번지(묘지)							
사업면적	39,030.6㎡							
건축물	기존			증축			용도	비고
	동별	층별	면적(㎡)	동별	층별	면적(㎡)		
	주1동	지상1층	223.56				사무실	기존
				주2동	지상1층	402.49	묘지관련시설	증축
					지상2층	600.00	묘지관련시설	
					지상3층	600.00	묘지관련시설	
					지상4층	600.00	묘지관련시설	
			옥탑층	47.04	묘지관련시설			
주3동	지상1층	32.00				식당	기존	
	합계	255.56		합계	2,202.49			
건축면적	859.54㎡							
건폐율	2.2%							
연면적	2,458.05㎡							
용적율	6.3%							

마.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성산면 왕골로 239-29
- 2) 사업시행자 성명 : 재단법인 성산공원

바.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4. 3. 31.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성산 봉안시설)

위치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군산시 성산면 대명리	429	묘	39,030.6	39,030.6	재단법인 성산공원	군산시 성산면 왕골로 239-29				
	1필지		39,030.6	39,030.6						

4.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22-893호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변경)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변경)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

2022. 4. 21.

군 산 시 장



#### 1. 목 적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 및 암석이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시 인명피해 및 재산의 손실 등의 우려가 높아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고 사면 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 2. 주민의견 수렴 주요내용

- 가. 행정예고 기간 : 2022. 4. 21. ~ 2022. 5. 11. (20일간)
- 나. 의견제출 기간 : 2022. 4. 21. ~ 2022. 5. 11. (20일간)
- 다. 공고방법 : 군산시청 홈페이지(<https://www.gunsan.go.kr>) 및 게시판
- 라. 관련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 3.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산시청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2022년 5월 11일까지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63-452-4959)

라. 제출처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17(군산시청 안전총괄과)

마. 문의처 :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계 ☎063)454-3864

바. 처리방향 : 제출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 대상지

구분	지구명	위 치	등급 및 규모			지정(변경)사유	관리 기관
			유형	등급	면 적		
당초	송풍7	군산시 신평동 987-77번지 일원	붕괴 위험	D	A=3,824㎡	붕괴위험지역 지정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군산시청
변경	송풍7	군산시 신평동 987-77번지 일원	붕괴 위험	D	A=7,217.8㎡	" (사업 편입면적 변경)	군산시청

### 5. 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시기	사업예산 (백만원)	사업내용
송풍7	2021. ~ 2023.	3,000	사면정비(A=2,322㎡), 수로관 부설(350m), 옹벽(H=3.0m, L=140m) 및 낙석방지책(L=140m) 등

※ 사업시기, 사업예산, 사업내용은 예산(국·지방비)지원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6.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기사항

-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옹벽·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그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7. 행위허가 등 사전 협의

가. 붕괴위험지역에서는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군산시 안전총괄과(자연재난계)와 협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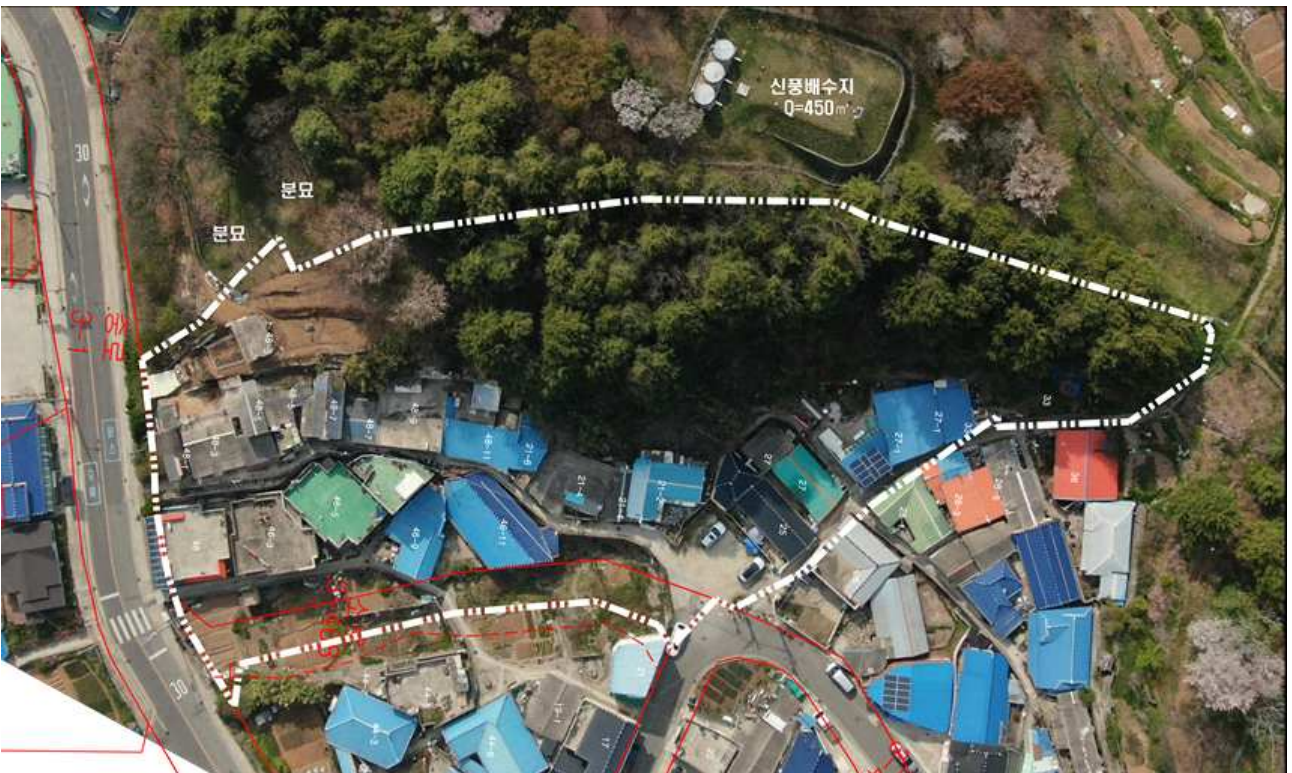
- 붙임 1. 붕괴위험지역 지정 대상 현황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붙임 1)

사업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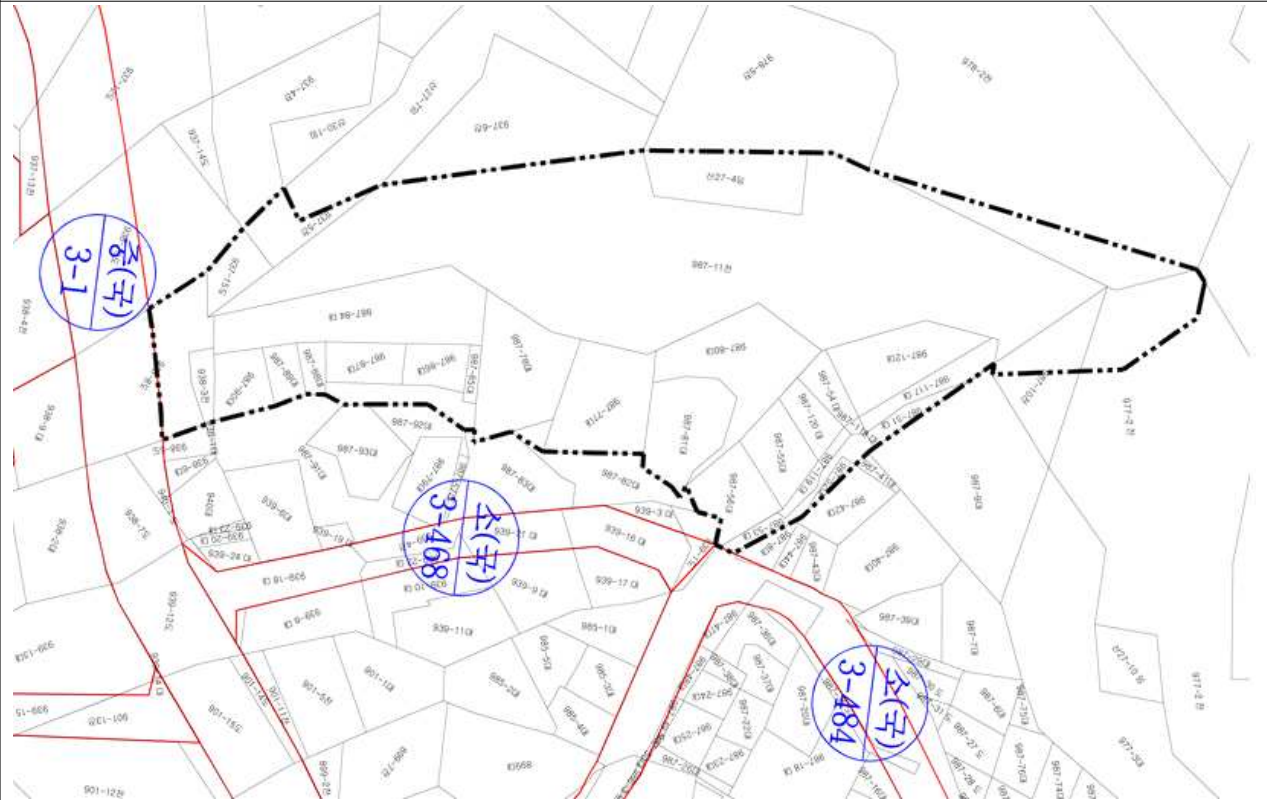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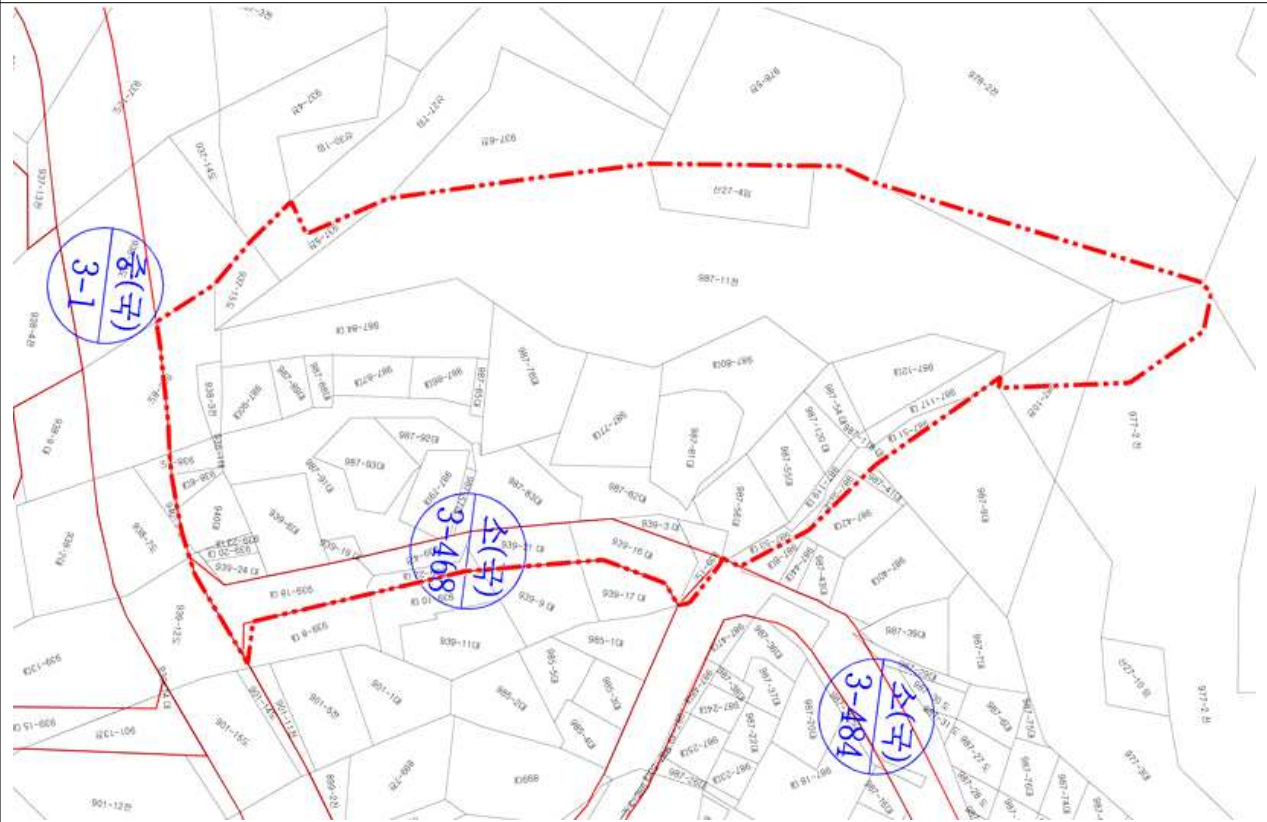


□ 변경 전 · 후

변경 전



변경 후





군산시 공고 제2022 - 910호

### 군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공사완료 공고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633-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2. 04.

군 산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633-7번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나. 명 칭 : 농업 미생물 배양센터 증축공사
-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가. 부지면적 : 19,341㎡
  - 나. 건축규모 : 건축면적 3,494.25㎡, 연면적 5,644.63㎡

구분	층별	당초		변경		비고
		면적(㎡)	용도	면적(㎡)	용도	
주1동	1층	580.80	업무시설	580.80	업무시설	
	2층	580.80		580.80		
	3층	580.80		580.80		
	4층	430.10		430.10		

주2동	1층	138.87	업무시설	138.87	업무시설	
주3동	1층	425.02	업무시설	425.02	업무시설	
	2층	87.26	업무시설	87.26	업무시설	
주4동	1층	555.78	업무시설	555.78	업무시설	
	2층	494.58	업무시설	494.58	업무시설	
주5동	1층	147.29	업무시설	147.29	업무시설	
주6동	1층	123.20	업무시설	123.20	업무시설	
주7동	1층	303.83	업무시설	303.83	업무시설	
주8동	1층	128.51	업무시설	128.51	업무시설	
주9	1층	197.96	업무시설	197.96	업무시설	
	2층	72.52	업무시설	72.52	업무시설	
주10	1층	-	-	208.51	업무시설	신축
주11	1층	-	-	488.00	업무시설	신축
부1동	1층	33.60	업무시설	33.60	업무시설	
부2동	1층	33.60	업무시설	33.60	업무시설	
부3동	1층	33.60	업무시설	33.60	업무시설	
합계		4,948.12		5,644.63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나. 성 명 : 군산시장(주택행정과)

5. 사업기간 : 인가고시일 ~ 2022. 2. 28.

6.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군산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 산 시 의 회 의



2022년 5월 2일

군산시의회 예규 제42호

**군산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군산시의회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로서 군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과 군산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2. “고위공직자”란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고위공직자로서 의원을 말한다.

제3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군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군산시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의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의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의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의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의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의회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의회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 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회피·기피·조치·점검·통보·고발·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2조(위반행위 신고) ①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의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7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19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의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

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0조(징계양정 기준) ① 의장이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반행위자가 고위공직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하고 징계의 종류는 같은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와 같다.

### 부 칙

이 예규는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 거나; 비위의 정 도가 약하고 중과 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참고 기준
법 제5조, 제8조, 제9조, 제15조에 따른 신고신청제출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호 하목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제한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호 하목
법 제14조에 따른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호 파목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호 파목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의 비밀 보장 의무 위반 ·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 같은 법 제20조의2의 특별 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 같은 법 제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등 거부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호 하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호 하목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비밀 누설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군산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b>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b>			
* 어두운 난( )은 신고·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	성명	소속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
	연락처	② 사적이해관계	
	③ 관련 직무		
	④ 직무관련자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군산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의회 의장 귀중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군산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3호서식]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관련 직무	

의 견

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군산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4호서식]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	-----	-----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신고·신청일
--------	----	----	--------

조치대상	[ ] 신고·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조치결과	[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기타 참고사항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의회 의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군산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5호서식]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성명	소속
	연락처	
	② 관련 직무	
	③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신청하는 조치 유형	[ ] 직무 대리자 지정 [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신청 사유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군산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6호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임용일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근무기간	명칭(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대리, 고문·자문 등**

활동기간	기관명(소재지)	주요 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근무기간	업체명(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기타**

근무기간	근무처(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의회 의장 귀중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군산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어두운 칸(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	----	----	--------

거래자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input type="checkbox"/> ① 특수관계사업자

거래상대방	성명	소속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
	② 직무관련자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			

거래내용	<input type="checkbox"/> 금전 차용 <input type="checkbox"/> 금전 대부 <input type="checkbox"/> 유가증권 거래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이율)	거래원인
	<input type="checkbox"/>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input type="checkbox"/> 기타 재산상 거래	
	계약체결일	거래대상
	거래금액	거래원인
	<input type="checkbox"/> 물품 계약 <input type="checkbox"/> 용역 계약 <input type="checkbox"/> 공사 계약 <input type="checkbox"/> 기타 계약	
계약체결일	계약사항	
거래금액	거래원인	

참고자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제철용품)]

■ 군산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8호서식]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군산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군산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관련자 (퇴직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① 직무관련자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②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		
	일시	사유	
접촉 사항	유형	비용부담자	
	<input type="checkbox"/> 골프 <input type="checkbox"/> 여행 <input type="checkbox"/> 사행성 오락		<input type="checkbox"/> 신고인 <input type="checkbox"/> 퇴직공무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②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군산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1호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 어두운 칸(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b>접수번호</b>	<b>접수일</b>	<b>처리일</b>
<b>신고자</b>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신고내용 확인·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b>법 위반행위자 (피신고자)</b>	[ ] 개인	
	성명	연락처
	직업	
	[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	연락처
	직업	
<b>법 위반행위자 (피신고자)</b>	명칭(법인 또는 단체)	소재지
	[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성명	연락처
	직업	
<b>위반행위 신고</b>	명칭(법인·단체 또는 개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신고경위 및 이유	
<b>증거자료</b>	일시	내용
	장소	
	위와 같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중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군산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자	신고기관 <input type="checkbox"/>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감독기관 <input type="checkbox"/> 수사기관 <input type="checkbox"/> 감사원 <input type="checkbox"/>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위반행위 신고사항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조사기관 및 조사 결과	신고내용	
	<input type="checkbox"/>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input type="checkbox"/>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input type="checkbox"/>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	
	<input type="checkbox"/>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	
	<input type="checkbox"/>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 )	
조사 결과의 처리이유	<input type="checkbox"/>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input type="checkbox"/>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input type="checkbox"/> 수사기관 ( )	
	<input type="checkbox"/>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	
기타 사항	<input type="checkbox"/>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군산시의회 의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군산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인	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위반행위 신고사항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종결처리	신고내용	
	조사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종결사유	
	[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군산시의회 의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군산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

상담일시		상담방법	[ ] 전자우편 [ ] 전화 [ ] 방문 [ ] 기타( )
상담신청인	성명	연락처	
	직위(직급)	소속	
상담유형	<input type="checkbox"/>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input type="checkbox"/> 가족 채용 제한 <input type="checkbox"/>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input type="checkbox"/> 수의계약 체결 제한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input type="checkbox"/>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input type="checkbox"/>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		
상담내용			
상담결과			

년 월 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